HACCP 자주 하는 질문(FAQ)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Contents

Ⅰ. 식품위생법 및 안전관리인증(HACCP)고시

Q1. 자가품질검사 항목, 주기 및 검사기관 등 ····· 3p

Q2.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식품유형별 기준 및 규격 등 ····· 4p

Q3. 위탁생산과 HACCP ····· 4p

Q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대상 식품 및 적용시기 ····· 5p

Q5. HACCP 적용가능한 영업의 형태 ····· 6p

Q6.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품목 심벌(인증마크 색상 및 크기조정 등) 7p

Q7. HACCP 법정교육 ····· 8p

Q8. HACCP 인증대상 추가(유사유형) ····· 10p

Q9. HACCP 인증 연장심사 관련 등 ····· 11p

Ⅱ. HACCP 인증신청 등 민원사무처리 관련사항

Q10. HACCP 적용업소 인증신청 ····· 12p

Q11. HACCP 변경심사 신청 ····· 13p

Q12. HACCP 인증심사 수수료 납부 및 환불 ····· 14p

Q13. HACCP 인증서 재발급(대표자, 업소명 변경 및 영문인증서 발급 등) 15p

Q14. HACCP 인증서 반납 ····· 15p

Ⅲ. HACCP 기술상담 및 기타사항 등

Q15. HACCP 인증 전·후 상담 및 신청 방법 ····· 16p

Q16.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국고지원 ····· 17p

Q17. 위생관리 일지 등 양식 ····· 18p

Q18. 청결한 위생복 착용 ····· 18p

Q19. 검·교정 방법 및 주기 ····· 20p

Q20. 회수관리프로그램(회수방법, 모의회수 등) ····· 20p

Q21. 검증 ····· 21p

Ⅰ. 식품위생법 및 안전관리인증(HACCP)고시

Q1. 자가품질검사 항목, 주기 및 검사기관 등

□ 자가품질검사 항목, 주기

○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별표 1] 에 따라 식품 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항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제31조(자가품질검사) 관련)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 [별표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자가품질검사 시험·검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

☞ 식약처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소비자위해예방 → 시험검사기관(식품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

Q2.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식품유형별 기준 및 규격 등

○ 식품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식품유형별 기준 및 규격은 식품공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전문

Q3. 위탁생산과 HACCP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36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품목제조 보고 등) ①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⑩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3조 ①항

Q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대상 식품 및 적용시기

○ 의무적용 품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①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2.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4. 과자류 중 과자·캔디류·빙과류
5. 음료류
6. 레토르트식품
7. 김치류 중 배추김치
8. 빵 또는 떡류 중 빵류·떡류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국수·유탕면류
11. 특수용도식품
1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2의2.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13.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시행일 : 2017.12.1.)

○ 의무적용 시기

<table>
<tr><th rowspan="3">단계</th><th rowspan="3">대상기준</th><th colspan="4">시행시기</th></tr>
<tr><th colspan="2">1차 의무적용[1)]</th><th colspan="2">2차 의무적용[2)]</th></tr>
<tr><th>어묵류 등
6개 품목</th><th>배추김치</th><th>과자·캔디류 등
8개 품목</th><th>매출액
100억원 이상</th></tr>
<tr><td>1</td><td>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 이상인 업체</td><td>2006.12.1.~</td><td>2008.12.1.~</td><td>2014.12.1.~</td><td rowspan="7">2017.12.1.~</td></tr>
<tr><td>2</td><td>연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21인 이상인 업체</td><td>2008.12.1.~</td><td>2010.12.1.~</td><td>2016.12.1.~</td></tr>
<tr><td rowspan="2">3</td><td>(떡류) 연매출액 1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수 10인 이상인 업체</td><td rowspan="2">2010.12.1.~</td><td rowspan="2">2012.12.1.~</td><td>2017.12.1.~</td></tr>
<tr><td>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6인 이상인 업체</td><td>2018.12.1.~</td></tr>
<tr><td>4</td><td>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 이하인 업체</td><td>2012.12.1.~</td><td>2014.12.1.~</td><td>2020.12.1.~</td></tr>
<tr><td rowspan="2">5
(순대)</td><td>종업원수 2인 이상인 업체</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2016.12.1.~</td></tr>
<tr><td>종업원수 2인 미만인 업체</td><td>2017.12.1.~</td></tr>
</table>

1)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음료류(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류 중 배추김치

2)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비가열음료 제외),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 의무적용 시기는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종업원 수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시기를 말함
※ 과자·캔디류 등 8개 품목은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 기준
※ 순대는 2014년 생산실적 기준

☞ HACCP 의무적용 시기는 연매출액 및 종업원 수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시기를 말하며, 연매출액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제조·가공하는 의무적용 대상 식품·축산물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종업원 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영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Q5. HACCP 적용가능한 영업의 형태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 중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농업인과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외에 소재하여 식품·축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자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이 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가공업소	- 기타 식품판매업소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 식품소분업소
- 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 축산물작업장·업소
- 도시락제조·가공업소(운반급식 포함)	- 도축장, 농장

☞ 축산물 관련 문의사항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대표전화 031-390-52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제2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체계 및 운영 관리 제3조(적용대상 영업자)

Q6.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품목 심벌(인증마크 색상 및 크기조정 등)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7조에 따라 해썹 적용품목에 한하여 해썹 인증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해썹 적용심벌이나 현판은 다음 기본 심벌을 참조하여 제품 및 업소의 특성과 포장 재질 또는 디자인에 적합하게 다양한 색상과 크기를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식품 또는 축산물 구분이 필요한 경우 심벌 내부에 "식품안전관리인증" 또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안전관리인증식품 또는 안전관리인증축산물"로 표시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7조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심벌

그림1. HACCP 적용작업장·업소
(도축장·집유장·농장 제외)

그림2.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장소에 맞게 **색상 및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본 견본과 같아야 합니다.**

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인증)작업장·업소·농장 현판 견본

그림1. HACCP 적용작업장·업소
(도축장·집유장·농장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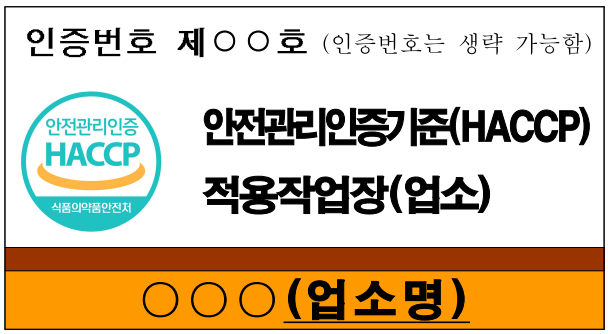

그림2.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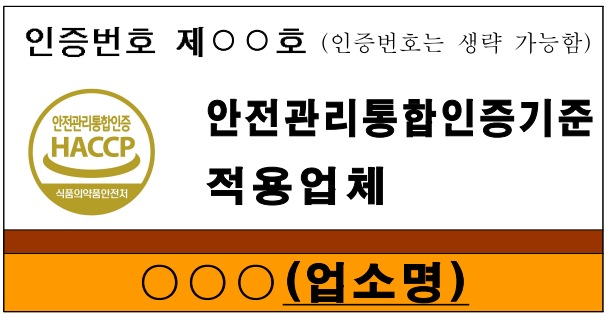

※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장소에 맞게 **현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과 가로(2):세로(1) 크기의 비는 가능한 본 견본과 같아야 합니다.**

Q7. HACCP 법정 교육 훈련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1. 영업자 교육 훈련: 2시간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 교육 훈련: 16시간
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원, 기타 종업원 교육 훈련: 4시간

☞ 신규교육훈련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 팀장 교육 훈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별첨1]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영업자가 제2호의 HACCP 팀장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팀원, 기타 종업원은 HACCP에 따른 교육훈련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HACCP 팀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교육·훈련 : 연 1회 4시간

☞ HACCP 적용업소의 HACCP 팀장, 팀원 및 기타 종업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연 1회 4시간의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팀원, 기타 종업원은 HACCP에 따른 교육훈련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HACCP 팀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정기교육훈련 개시일은 인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거나 인증연도의 차기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그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어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명하는 교육·훈련 : 8시간 이내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별첨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현황

○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제22조 관련

지정번호	교육훈련기관명	대표자	소 재 지	훈련과정
1 ('06.4.25)	푸드원텍(주)	오원택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906호) T. 02-2027-3154, 3160	경영자, 팀장, 팀원, 정기교육
2 ('06.8.25)	경상대학교 HACCP교육원	정덕화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내 T. 055-763-4129	〃
3 ('06.10.11)	경남HACCP교육 훈련원	이성학	경남 진주시 의병로 51 진주보건대학내 T. 055-740-1757, 1810	〃
4 ('08.1.16)	한국식품정보원	이상호	(사무실)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동 905호 T. 02-2671-2690 (서울교육장)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3가 54-66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7층 19호 (대전교육장)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14 웰지빌딩 8~10층	〃
5 ('09.2.13)	신라대학교 HACCP교육훈련원	하상안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 신라대학교 내 T. 051-999-6989	〃
6 ('09.6.22)	주식회사 미래엠케이씨	유영준	(사무실, 서울교육장)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3 영동테크노타워 1002호 T. 02-783-9004 (대전교육장)대전시 서구 둔산로 74번길 37	〃
7 ('10.3.31)	(주)에프디엑스 (FDX)	정수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80 삼영빌딩 204호 T. 070-8250-7812	〃
8 ('11.4.13)	한국식품산업협회	박인구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20 미성빌딩 4~5층 T. 02-3470-8194	〃
9 ('11.4.13)	㈜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	천석조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10길 46, 2층 T. 02-2140-0288	〃
10 ('14.2.3)	한양대학교 HACCP교육원	엄애선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종합기술연구원 110호 T. 02-2220-1203	〃
11 ('15.2.4)	대구대학교 HACCP교육원	이덕영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T. 053-850-4775	〃
12 ('15.7.23)	전북대학교 HACCP교육원	김영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T. 063-270-3686	〃

Ⅱ. HACCP 인증신청 등 민원사무처리 관련사항

Q8. HACCP 적용업소 인증 신청 (신규 영업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HACCP 인증신청 시 구비서류 및 접수방법

- 구비서류 : 식품인증원 홈페이지→자주 찾는 서비스→HACCP 인증절차→인증신청서식
  - 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신청서
  - ②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
  - ③ 영업등록증(앞·뒷면)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계산서 수신용 E-mail 주소 기재요망
- 접수방법 : 우편, 전자접수(E-mail), 팩스 또는 방문접수
  -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5층 고객지원센터(34917)
  - · E-mail : doc@haccpkorea.or.kr
  - · 팩스(FAX) : 042-255-1102

○ 처리기간 : 40일(법정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 신청인의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연장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리기간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HACCP 인증신청 수수료 : 200,000원 (유형별)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 (시행규칙 제63조 관련)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제10조

Q9. HACCP 인증사항(소재지 또는 중요관리점) 변경심사 신청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2조에 따라 HACCP 적용업소로 인증된 자가 **중요관리점을 추가·삭제·변경**하는 등 인증사항을 변경하거나 **소재지를 이전**(이 경우에도 HACCP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하는 때에는 **변경 또는 이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HACCP 인증사항 변경신청 시 구비서류 및 접수방법

- 구비서류 : 식품인증원 홈페이지→자주 찾는 서비스→HACCP 인증절차→인증신청서식
  - 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서
  - 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 ③ 변경사항 증명 서류(영업등록증(앞·뒷면), 중요관리점 변경내용 설명서)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계산서 수신용 E-mail 주소 기재요망)
- 접수방법 : 우편, 전자접수(E-mail) 또는 방문접수
  -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5층 고객지원센터(34917)
  - · E-mail : doc@haccpkorea.or.kr

○ 처리기간 : 15일(법정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 HACCP 인증 변경신청 수수료 : 100,000원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 (시행규칙 제63조 관련)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제10조

※ 기타사항(CCP 한계기준, 면적 등) 변경 문의

- 한계기준 변경은 CCP변경대상이 아니며 유효성 검사와 실행평가를 거쳐 업소 자체에서 변경/수정이 가능하며 추후 식약청 정기조사 평가 때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 작업장 면적 추가 시 영업등록증상 면적을 변경 후 변경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Q10. HACCP 인증 연장 신청

「식품위생법」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에 따라 식품 해썹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연장심사 주기 (최초인증 일자별 유효기간)

HACCP 인증일자	유효기간(재인증심사)
2013년 8월 3일 이전	2016년 8월 4일 ~ 2017년 8월 3일까지
2013년 8월 4일 ~ 2014년 8월 3일까지	2016년 8월 4일 ~ 2019년 8월 3일까지
2014년 8월 4일 ~ 2016년 8월 3일까지	2020년 8월 4일 ~ 2022년 8월 3일까지
2016년 8월 4일 이후	2019년 8월 4일 ~ (3년 단위)

※ 해썹 인증 연장심사 도래시에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해썹 인증사항이 소멸됩니다.

○ HACCP 인증사항 변경신청 시 구비서류 및 접수방법

- 구비서류 : 식품인증원 홈페이지→자주 찾는 서비스→HACCP 인증절차→인증신청서식
  - 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
  - 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 ③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
  - ④ 영업등록증(앞·뒷면)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계산서 수신용 E-mail 주소 기재요망
- 접수방법 : 우편, 전자접수(E-mail) 또는 방문접수
  -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5층 고객지원센터(34917)
  - · E-mail : doc@haccpkorea.or.kr

○ 처리기간 : 60일(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준, 법정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8조의2 및 부칙 제5조(법률 제14022호)

※ **인증 연장심사 수수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입법예고, 2016.08.30) 개정안이 진행중에 있는바 **법령개정 완료 후 인증서 재교부시 징수**

Q11. HACCP 인증대상 추가(유사유형)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3조(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대상의 추가)에 따라 **이미 인증받은 식품 또는 축산물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제조된 유사한 유형의 식품 또는 축산물**을 HACCP 인증 식품 또는 축산물로 추가하고자 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 별도의 현장평가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그 식품 또는 축산물을 HACCP 인증 식품 또는 축산물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 **(유사유형 판정)** 유사유형에 대한 인정기준은 1)원·부재료 유사성, 2)원료 및 제품의 위해도 평가로 기준함

- 신청품목이 기 HACCP인증제품의 원·부재료에 포함되는 경우
  ex) 배추김치 → 절임류, 김칫속 등
- 신청품목이 기 HACCP인증제품과 원·부재료 일부가 차이나는 경우
  ex) 분쇄가공육(유탕 돈까스) ↔ 식육가공품(유탕 고구마돈까스),
  시리얼류 → 곡류가공품, 과·채음료 ↔ 과·채주스 등
- 원·부재료에 차이가 있으나 원료의 위해도가 유사하고 원료의 보관, 제품의 유통·보관방법, 섭취대상 등 제품의 위해도가 유사할 경우
  ex) 냉동수산식품(어류) ↔ 냉동수산식품(연체류), 아이스크림 ↔ 빙과류,
  분쇄가공육(유탕 돈까스) ↔ 튀김식품(유탕 생선까스) 등

○ **(동일공정 판정)** 동일공정은 **동일한 작업장에서 동일한 제조설비를 사용으로 제한**

- 기 HACCP인증제품의 제조공정 중 위해도의 변화가 유사한 범위에서 일부 공정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전처리/절단 등 단순 공정 등) 인정하나, 위해도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공정 추가 및 변경 또는 별개의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인 정	불인정
- 기 HACCP인증제품 공정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기 HACCP인증제품 공정과 신청하는 유형의 공정이 상이한 경우
예) 배추김치 입고/보관 → 정선 → 이절/절임 → 선별/계량 → 세척(CCP) → 탈수 → 절단/혼합 → 속넣기 → 금속검출(CCP) → 계량/포장 → 보관/출하 절임류 입고/보관 → 정선 → 이절/절임 → 선별/계량 → 세척(CCP) → 탈수 → 금속검출(CCP) → 계량/포장 → 보관/출하	예) 수산물가공품 입고/보관 → 개포/해동 → 전처리 → 절단/포뜨기 → 세척(CCP) → 탈수 → 계량/포장 → 금속검출(CCP) → 보관/출하 냉동수산식품(어류) 입고/보관 → 개포/해동 → 전처리 → 절단/포뜨기 → 세척(CCP) → 나열 → 급속동결 → 탈피 → 계량/포장 → 금속검출(CCP) → 보관/출하

○ **(심사절차 및 제출서류)** 식품유형의 특성 및 제출 서류 검토 후 판정

- 구비서류 : 식품인증원 홈페이지→자주 찾는 서비스→HACCP 인증절차→인증신청서식
  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대상 추가 신청서
  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③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
  ④ 영업등록증(앞·뒷면)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계산서 수신용 E-mail 주소 기재요망
- 접수방법 : 우편, 전자접수(E-mail)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5층 고객지원센터(34917)
  · E-mail : doc@haccpkorea.or.kr

○ 처리기간 : 7일(제출서류 및 수수료의 완료일에 따름)

○ HACCP 인증대상 추가 수수료 : 200,000원

○ 관련법령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제13조

Q12. HACCP 인증심사 수수료 납부 및 환불

○ HACCP 인증심사 수수료
- 인증 심사 : 200,000원
- 변경 심사 : 100,000원
- 인증대상 추가(유사유형) 심사 : 200,000원
- 인증연장 심사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입법예고, 2016.08.30) 개정안이 진행 중에 있는바 법령개정 완료 후 인증서 재교부시 징수

○ HACCP 인증 수수료 납부 계좌번호
- 계좌번호 : 317-0008-254511 (농협은행)
- 예금주명 : (재)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수수료 환불 관련 문의
- 인증심사 및 변경 인증심사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Q13. HACCP 인증서 재발급 (대표자, 업소명 변경 및 영문인증서 발급 등)

○ 재발급(대표자, 업소명 변경)

- 구비서류 : 식품인증원 홈페이지→자주 찾는 서비스→HACCP 인증절차→인증신청서식
  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③ 영업등록증(앞·뒷면) 사본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5층 고객지원센터(34917)

○ 영문인증서 발급

- 구비서류 : 식품인증원 홈페이지→자주 찾는 서비스→HACCP 인증절차→인증신청서식
  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대표자 성명, 업체명, 주소 영문명 표기 요망
  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국문) 사본
- 접수방법 : 우편, 전자접수(E-mail), 팩스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5층 고객지원센터(34917)
  · E-mail : doc@haccpkorea.or.kr · 팩스(FAX) : 042-255-1102

○ 처리기간 : 5일

Q14. HACCP 인증서 반납

○ 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취소를 통보받은 영업자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거나 영업을 폐업한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인증품목의 품목제조보고 반납의 경우에도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HACCP 인증취소 등 인증서 반납

- 제출서류 : ① HACCP 적용업소 인증취소(자진반납, 폐업) 요청 공문(양식없음)
  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5층 고객지원센터(34917)

○ 관련법령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제14조

Ⅲ. HACCP 기술상담 및 기타사항 등

Q15. HACCP 인증 전·후 상담 및 신청 방법

STEP 1 **신 청**		STEP 2 **접수 및 일정수립**		STEP 3 **상담 및 기술지원**		STEP 4 **진도관리**
전문기술상담 맞춤형 HACCP 기술지도 HACCP 사후관리 (민원인)	⇨	신청서 접수 및 일정 안내 전화 (고객지원센터)	⇨	전문기술상담 및 HACCP 현장 기술지원 (기술지원1팀·2팀)	⇨	HACCP 인증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진도관리 (담당자)

○ **전문기술상담**

- HACCP 전반 및 작업장 레이아웃, 시설·설비 기본요건, 관리기준서 작성 시 애로사항 등 HACCP 준비를 위한 기술상담 사업입니다.

※ 전문기술상담은 예약 후 대전 본원 및 서울지원으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 HACCP 기술지원**

- 맞춤형 HACCP 기술지원은 HACCP 적용 추진을 위한 시설·설비 등 현장 위생수준 진단, 관리기준서 검토, HACCP 실시상황 모의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맞춤형 HACCP 기술지원은 연도별 인증원 사업 추진 내용에 따라 우선순위로 지원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맞춤형 HACCP 기술지원 우선순위

① 위생·안전 취약식품(순대, 떡류)
② 2차 의무적용 품목(과자, 캔디,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③ 자율적용품목

○ **HACCP 사후관리 기술지원**

- 정기 조사·평가 차등관리 '보완', '미흡'업체 및 HACCP 인증 후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HACCP 시스템 자체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16.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국고지원

○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른 **해썹 의무적용 품목 또는 순대, 떡류** 제조 소규모 업체[3)]

* 의무적용 품목 제조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신청 미달 시 자율적용 품목도 지원

* 2015. 12. 31. 이전 해썹 인증을 받았거나, 이미 동 해썹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 지원규모

- HACCP의무적용품목 제조 소규모업체 146개소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 선착순 지원 (2천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50% 국고지원)
- HACCP의무적용 확대 또는 조기 추진되는 순대, 떡류 제조 소규모업체 161개소 시설개선자금 1천4백만원 선착순 지원(2천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70% 국고지원)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방지를 위하여 **인증 후 교부**

  *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16.12.15.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

○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해썹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해썹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해썹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

  *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3) 해당품목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체

○ 지원방법

- 보조금 지원 대상업체 현황 파악 및 무상 집중 기술지원 등을 위해 「**해썹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 **식약처에 제출**
- 시설 개·보수 후 **해썹 인증 신청** 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지방식약청에** 제출

  * 신청서 제출 및 지방청 현장확인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해썹 **인증 평가**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 관련 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6-22호(2016.01.15.)

Q17. 위생관리 일지 등 양식

○ 식약처는 '16년 규제개선과제로 「HACCP관련 표준서식 보급 확대 및 각종 점검서식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기존 "알기쉬운 HACCP관리" 등에 게재된 표준서식과 '개인위생점검표', '방충방서점검표', '냉동냉장창고온도점검표', '공정관리점검표' 등을 하나로 간소화한 서식을 식품인증원 홈페이지 **「HACCP 자료실-교육자료(HACCP 서류간소화 관련 표준서식 알림)」**에 게시하오니, 자료를 참고하여 표준서식을 업체 실정에 맞게 변형 또는 통합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Q18. 청결한 위생복 착용

○ 청결한 복장착용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위생복
- 위생모(머리카락이 노출되지 않도록 착용)
- 마스크(청결구역 내 착용은 필수, 일반구역 작업자는 선택)
- 앞치마(작업형태에 따라 선택)
- 위생화(위생장화, 작업형태에 따라 적절한 위생화를 선정)
- 기타 필요한 복장

※ 위생복, 위생화는 세척소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흰색을 권고하나, 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위생복은 이물혼입의 우려가 높은 단추 등은 지양하며, 벨크로(일명 찍찍이)를 권고합니다.

위생복 및 위생용품 착용기준

	청결구역		일반구역		생산작업자 이외인원 (공무, 자재)		견학자	
착용모습								
착용품	위생복	O	위생복	O	위생복	O	위생까운	O
	위생모	O	위생모	O	위생모	O	위생모	O
	위생화	O	위생화	O	위생화	O (작업장용)	위생화	O (방문자용)
	앞치마	O	앞치마	O	앞치마	X	앞치마	X
	위생장갑	O	위생장갑	O	위생장갑	X	위생장갑	X
	면장갑	O (위생장갑 감안)	면장갑	O (위생장갑 감안)	면장갑	X	면장갑	X
	마스크	O	마스크	필요시 착용 (청결작업장 출입시 착용)	마스크	필요시 착용 (청결작업장 출입시 착용)	마스크	필요시 착용 (청결작업장 출입시 착용)

위생복 착용방법

❶ 위생복 소매, 바지 아래를 걷지 않고 완전히 내리며, 상의 지퍼들을 개방하지 않는다.

바지 밑단

작업복 상의 착용

❷ 위생모 머리전체를 감싸도록하여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❸ 위생화 바지끝자락를 완전히 위생화에 넣는다.

❹ 앞치마 가슴에서 무릎까지 가릴수 있게 착용한 후 뒤에 끈을 묶는다.

❺ 위생장갑 손목주위 작업복 소매를 덮어 착용한다.

❻ 마스크 호흡기(코,입)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한다.

정면

측면

Q19. 검·교정 방법 및 주기

○ “검·교정”이란 시험 및 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계량 계측기의 정밀도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주기와 절차에 따라 비교, 검사하여 교정하는 행위입니다.

○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장비 및 냉장·냉동, 가열처리 시설 등의 온도측정 장치, 검사용 장비 및 기구는 정기적으로 교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 검·교정 대상

-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저울, 온도, 타이머, 수량계 등이 있으며, 사용하고 있는 계측기의 종류 및 수량을 파악합니다.

○ 검·교정 방법

- 외부 공인 국가교정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속검출기나 X-ray 검출기의 경우 검·교정할 수 있는 공인 검·교정기관(공인기관이 없다면 기기 제조업체의 정밀도와 성능에 대한 보증내용 및 기간이 있는 보증서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통상 연1회 이상 권장)이 해썹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 새로 구입한 모니터링 도구(저울, 온도계 등) 및 설비 등 경우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출고 시 정확도를 확인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표준품을 이용하여 자체 검·교정할 경우 표준품의 검증범위가 자체 검·교정 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Q20. 회수관리프로그램(회수방법, 모의회수 등)

○ 회수 대상 제품 및 방법

-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가 해당 식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완제품 뿐만아니라 원·부재료에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 모의회수

- 회수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를 좀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모의회수입니다. 납품처에 출고된 제품에 대한 모의 상황을 가정하여 생산한 제품, 유통된 제품, 재고량 등에 대한 정보가 원료수불, 생산일지, 판매기록과 연계하여 추적이 가능한 기준수립과 연습하는 것입니다.

※ 참고자료 : "위해식품 회수지침"[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

Q21. 검증

○ "검증"이란 수립된 HACCP 계획의 효과성 및 실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평가하는 활동입니다.

○ 검증의 분류

- 검증은 검증주체에 따라 내부/외부검증, 검증주기에 따라 최초/일상/정기/특별검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검증 내용

- 검증은 HACCP 계획이 올바르게 수립되어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유효성 평가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행성 검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검증활동을 위해서는 기록의 검토, 현장 조사, 시험·검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 참고자료 : HACCP 평가(심사) 매뉴얼 [인증원 홈페이지 - 자료실(교육자료)]